

구직자

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면?
(법제4조제3항)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다면? (법제4조제4항)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응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?

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 (법제11조제1항)

※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(법제11조제1항)

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

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'14일에서 180일'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

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.(법제11조제4항)

※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(법제11조제1항)

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참고

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

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직자가 위 내용과 관련되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해당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(고용관리과, 일부 지역협력과)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(뒷면 지방관서 연락처 참조)

채용절차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자 연락처

지역	지청	부서	연락처
서울	본청	고용관리과	02-2250-5815
서울	서울강남	고용관리과	02-3465-8409
서울	서울동부	고용관리과	02-2142-8455
서울	서울서부	고용관리과	02-2077-6142
서울	서울남부	고용관리과	02-2639-2144
서울	서울북부	고용관리과	02-950-9731
서울	서울관악	고용관리과	02-3282-9125
충부	본청(인천)	고용관리과	032-460-4511
충부	인천북부	지역협력과	032-540-5625
충부	부천	지역협력과	032-320-8985
충부	의정부	고용관리과	031-850-7714
충부	고양	고용관리과	031-931-2901
경기	경기(수원)	고용관리과	031-259-0212
경기	성남	고용관리과	031-788-1584
경기	안양	지역협력과	031-463-7383
경기	안산	고용관리과	031-412-1914
경기	평택	지역협력과	031-646-1299
강원	강원(춘천)	고용관리과	033-269-3565
강원	강릉	지역협력과	033-650-2533
강원	원주	지역협력과	033-769-0834
강원	태백	지역협력팀	033-550-8604
강원	영월	지역협력팀	033-371-6212
부산	본청	고용관리과	051-860-2152
부산	부산동부	지역협력과	051-559-6660
부산	부산북부	지역협력과	051-330-9805
부산	창원	고용관리과	055-239-6522
부산	울산	고용관리과	052-228-1984
부산	양산	지역협력과	055-370-0913
부산	진주	지역협력과	055-760-6544
부산	통영	지역협력과	055-650-1939
대구	본청	고용관리과	053-667-6319
대구	대구서부	지역협력과	053-605-9009
대구	포항	고용관리과	054-271-6773
대구	구미	지역협력과	054-450-3573
대구	영주	지역협력팀	054-639-1131
대구	안동	지역협력팀	054-851-8079
광주	본청(제주포함)	고용관리과	062-609-8892
광주	전주	고용관리과	063-240-3325
광주	익산	지역협력과	063-839-0002
광주	군산	지역협력과	063-450-0514
광주	목포	지역협력과	061-280-0209
광주	여수	지역협력과	061-650-0119
대전	본청	고용관리과	042-480-6226
대전	청주	고용관리과	043-299-1112
대전	천안	고용관리과	041-560-2871
대전	충주	지역협력과	043-840-4023
대전	보령	지역협력과	041-930-6210

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
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
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
권익을 보호합니다.

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

고용노동부
Ministry of
Employment and Labor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

법 적용사업장은?

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
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공무원 채용은
제외), 공공기관

300명 이상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5. 1. 1시행

100명~300명 미만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6. 1. 1시행

30명~100명 미만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7. 1. 1시행

구직자



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것은?

거짓채용광고

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
홍보하기 위해 거짓채용 광고를 했다면? (법제4조제1항)

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이하의 벌금**

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
불리하게 변경 했다면? (법제4조제2항)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